

[서식 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〇. 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구 ○○ 로 ○○○ ○○아파트 ○동 ○○○호를 임차보증금 67,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같은 날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



았습니다. 그 뒤 소외 ●●●는 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인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2.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소외 ●●●에게 위 임차보증 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위 아파트 내에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둔 채 문을 잠 그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 3.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 타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로 인하여 제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 다가 재등록시에 제2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아 파트의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63,000,000원에서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느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 4. 그러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그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집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



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원고의 주민등록이 일시 직권말소 되었으나,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은 피고의 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63,000,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어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금63,000,000원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 〇. 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1. 갑 제2호증진단서1.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1. 갑 제4호증배당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1. 소장부본1통1. 송달료납부서1통



 2000.
 0.
 0.

 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 타	 ・관결서가 송달된 달부터 2수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소 제1항)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못하고 배당을 받지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임(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 집.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음: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